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센터 조직 및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센터 정관, 임원,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2조)
- 센터의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4조)

4.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5.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9. 4. 24. ~ 2019. 4. 28.(5일간)
- 공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8일 18:00(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 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회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04, 팩스 061)390-759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어린이 급식소”란(이하 “급식소”라 한다)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장성군(이하 “군”라 한다)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 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 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설립)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센터의 소재지는 군내에 둔다.

제4조(적용범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식사지도
4.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컨설팅
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집단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

제7조(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및 운영인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 전문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운영 지원) ① 군수는 센터가 제5조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정관)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목적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정수·임면·임기·직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 구성·소집·의결·기능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센터의 존립시기 및 해산,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센터가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임원) ① 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 ② 임원의 임기·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사회) ① 센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감사) 감사는 센터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감사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센터의 평가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